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
기부금품법 적용 배제〉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471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재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2. 22.
3. 회부연월일 : 2025. 12.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모집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기부금품 사용에 있어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외되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원활히 운용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현행법이 적용되어 기부금품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될 경우 그 사용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제외하여 원활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을 통해 국민체육 증진 및 체육단체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함)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서(안 제3조제1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11. (생략) <u><신설></u>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국민체육진흥법」</u>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법인·단체·개인 등으로부터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모집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현행법은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하여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

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¹⁾

이때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로서,²⁾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관한 규정은 기부금품의 과잉모집이나 부적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2006년 기부금품 모집 허가제를 규정하던 종전의 법률을 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음.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단체는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을 포함하는데,³⁾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라. 영리 또는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목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1)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①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모집·사용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금품의 모집”이란 서신, 광고,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공익법인 또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⁵⁾에 따라 기획재정부

-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4)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5)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익단체”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공익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만 해당한다.

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에 기부한 법인이나 개인 등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를 받은 단체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⁶⁾

그런데 **현행법**은 문화·예술과 달리 기부금품 모집의 공익 목적에 “**체육**”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체육단체 등에 대한 기부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⁷⁾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적용을 배제받아 별도의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 상 **체육단체**에 대하여는 법률의 적용 배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체육단체나 경기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별도로 등록해야 하고 기부금품을 원칙적으로 2년 내에 사용⁹⁾해야 하며 관리·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데에도 제한¹⁰⁾이 있다는

6) 이송림·한경석, 「기부금품 모집 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NARS 입법·정책보고서, Vol.71, 국회입법조사처, 2020.

7) 이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범위에 ‘체육의 진흥’을 명시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2211161호)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8) 2025년 「기부금품법」에 따라 “체육” 관련 목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등록한 사례는 유소년 야구, 취약계층 배구캠프 지원, 축구종합센터 시설 조성 총 3건으로 확인됨

9)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①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등록한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모집된 기부금품을 그 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②등록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모집금품을 사용하려는 용도가 당초의 모집목적과 같은 사업에 해당되면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점에서 체육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제한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체육단체의 민간 기부금품 모집과 활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특히 골프나 양궁 등 인기종목은 대회 운영이나 기업등의 후원 등을 통해 자체 수입을 확보할 수 있으나 그 외 비인기 종목단체는 자체 수입이 적어 재정자립도가 낮고,¹¹⁾

장애인체육회의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높아 기부가 더욱 저조하며¹²⁾ 지방체육회의 경우에도 지방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와의 관계에 따라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¹³⁾을 고려할 때, 기부 등을 통한 자체수입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③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은 모집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기부금품의 유형과 성질,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기간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용)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2021.

12)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2025.10.27.

13) 송길호 기자, “[신년인터뷰] 이규생 인천시체육회장 “재정 독립과 선순환 구조로 ‘건강한 시민, 행복한 인천’ 열어갈 것””, 2026.01.20. 중부일보, <https://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714878>, 2026.01.26. 최종확인

[2024년 체육단체별 종목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순위	단체명	결산액	자체 부담분	재정자립도	'23년 재정자립도
대한체육회(64개 정회원 평균)					41	45
	1	대한골프협회	8,770	7,795	89	88
	2	대한양궁협회	18,655	14,919	80	68
	3	대한파크골프협회	4,310	3,189	74	70
	4	대한롤러스포츠연맹	2,374	1,730	73	57
	5	대한핸드볼협회	12,762	8,996	70	75
	...					
	60	대한씨름협회	11,727	1,959	17	12
	61	대한가라데연맹	1,084	178	17	21
	62	대한하키협회	4,721	771	16	22
	63	대한스쿼시연맹	1,782	248	14	14
	64	대한카누연맹	2,813	105	4	13
대한장애인체육회(30개 경기단체 평균)					13	13
	1	대한장애인육상연맹	78	69	88	15
	2	대한장애인축구협회	2,032	751	37	32
	3	대한장애인골프협회	374	100	27	20
	...					
	28	대한장애인펜싱협회	1,019	32	3	38
	29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1,129	18	2	3
	30	대한장애인요트연맹	654	8	1	1
시·도체육회(17개 시도 평균)					8	9
	1	광주광역시체육회	51,618	14,288	28	25
	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30,457	7,313	24	28
	3	대구광역시체육회	34,655	6,523	19	16
	...					
	15	경기도체육회	46,193	26	0	0
	16	강원도체육회	30,981	-	-	2
		울산광역시체육회	26,923	-	-	-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체육백서』, 2026.

다만, 「기부금품법」은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사용용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모집 방법·주체 등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개별법에 대한 적용배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개정안
<신설>	제40조의2(기부금품 등) ①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 접수방법, 처리절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5472호)은 체육단체와 경기단체가 ‘국민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 모집·접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기부금품이 공익목적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모집, 접수방법, 처리절차,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부금품을 모집한 체육단체와 경기단체의 투명하고 공정한 기부금품 모집·사용을 담보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임.

또한 체육단체와 경기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은 정치후원금이나 크리

스마스셀 모금, 공동모금, 국민신탁 등과 같이 특수한 모집방법을 거치지 않고,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¹⁴⁾ 적용배제를 인정할 특수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 외에도 현행법령상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적용배제규정은 공연입장료에 부과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모금¹⁵⁾하기 위한 취지로 도

14) 현행법령 상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적용배제 법률	내 용
정치자금법	정치자금 기부 - 개인 또는 후원회 모금, 실명, 방법(수표, 신용카드, 계좌입금 등), 지출 제한
결핵예방법	크리스마스셀 모금
보훈기금법	보훈기금 설치, 국가보훈부장관의 모집기관 지정(88골프장)
문화예술진흥법	공연장 등 입장료(폐지), 전문예술단체·법인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제교류기금 설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치, 공동모금 사업
재해구호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연금품 모집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국민신탁단체에 기부·증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 기부 - 물류체계 구축, 취식 후 피해발생시 면책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접수, 답례품 한도 제한

15) 본래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에 일정 금액을 부과하여 기금을 모금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대한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2헌가2)이 있는 후 해당 기금은 주로 정부의 출연이나 국민체육기금·복권기금 등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구) 문화예술진흥법」 [시행 1996. 4. 1.] [법률 제5014호, 1995. 12. 6., 일부개정]

제19조 (기금의 모금) ①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호의 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모금할 수 있다.

1.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3. 문화재보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정문화재(宗教團體 所有의 文化財는 제외한다)
- ② 문화체육부장관은 제1항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내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③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을 승인받은 때에는 모금대상시설 운영자에게 모금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모금대상시설 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관람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모금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대상시설운영자가 모금액을 납부할 때에는 모금과 관련된 자료를

입되었다는 점, 체육단체와 경기단체는 현행 법령에 따라 모집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하여 체육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체육단체 및 경기단체에 적용배제를 인정하는 경우 다른 단체의 적용배제 요청이 증가하는 등 입법조치의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법 적용에 대한 예외 인정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체육 분야만을 달리 취급하는 경우 사회복지·환경·교육 등 다른 공익 분야와의 형평성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문 의 처
02) 6788-5350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금의 모금액, 모금대행기관의 지정, 모금수수료, 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